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8월 25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5년 9월 4일 회부
- 상정일자: 제30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5년 9월 4일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담당관)

가. 제안이유

-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명을 현행화하고, 평창군이장연합회에 대한 경비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관내 이장의 사기 진작과 원활한 활동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인용 법령명 현행화(안 제3조의2)
 -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 (변경) 「개인정보 보호법」
- 경비지원의 범위 변경 및 신설(안 제6조)
 - (기존)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대회 등 문화 · 체육행사 지원
 - (변경) 도 · 군 단위 이장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대회 등 문화 ·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 (신설) 평창군이장연합회 정기회의 참석 이장에 대한 급식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유진)

※ 검토보고서 전문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붙임 1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조례안 개요

- 제안자 : 평창군수 제출
- 제안일자 : 2025. 8. 25.
- 회부일자 : 2025. 9. 4.
- 상정일자 : 2025. 9. 4.

2. 제안이유

-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명을 현행화하고, 평창군이장연합회에 대한 경비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관내 이장의 사기 진작과 원활한 활동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용 법령명 현행화(안 제3조의2)
 -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 (변경) 「개인정보 보호법」
- 경비지원의 범위 변경 및 신설(안 제6조)

- (기존)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대회 등 문화·체육행사 지원
- (변경) 도·군 단위 이장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대회 등 문화·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 (신설) 평창군이장연합회 정기회의 참석 이장에 대한 급식비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7조에서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에서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명을 현행화하여 법적 표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평창군이장연합회의 경비 지원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이장의 사기진작과 활동 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3조의2제3항에서 인용 법령명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변경함.
- 안 제6조제6호에서 도·군 단위 대회의 개최 및 참가로 변경하고 평창군이장연합회 정기회의 참석 이장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신설함.

5.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명을 현행화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평창군이장연합회에 대한 경비 지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장의 사기 진작과 지역 현안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타당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다. (생략)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라~카. (생략)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53
----------	-----

제출연월일 : 2025. . .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명을 현행화하고, 평창군 이장연합회에 대한 경비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관내 이장의 사기 진작과 원활한 활동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법령명 현행화: 안 제3조의2제3항

1)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나. 단체 경비지원 사항 수정 및 추가: 안 제6조제6호 및 제9호

1) (기존)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대회 등 문화·체육 행사 지원

→ (변경) 도·군 단위 이장 체육대회, 수련대회, 단합대회 등 문화

·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2) (추가) 평창군이장연합회 정기회의 참석 이장에 대한 급식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5. 5. 14. ~ 25. 6.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5-774호, 행정담당관-11934(2025. 5. 13.)호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기획예산과-7702(2025. 5. 21.)호]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기획예산과-7702(2025. 5. 21.)호]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18410(2025. 5. 14.)호]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8777(2025. 6. 11.)호]

6) 조례규칙심의 : 원안의결 [기획예산과-9422(2025. 6. 23.)호]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개인정보보호법」**”를 “**「개인정보 보호법」**”로 한다.

제6조제6호 중 “**체육대회**”를 “**도·군 단위 이장 체육대회**”로, “**지원**”을 “**개최 및 참가**”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평창군이장연합회 정기회의 참석 이장에 대한 급식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비밀유지)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는 개인정보(<u>「개인정보보호법」</u>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말함)를 포함한다.	제3조의2(비밀유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개인정보 보호법」</u> ----- ----- -----.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 5. (생략) 6. <u>체육대회</u> , 수련대회, 단합대회 등 문화·체육행사 지원 7. · 8. (생략) <u><신설></u> 9. (생략)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도·군 단위 이장 체육대회</u> ----- <u>개최 및 참가</u> 7. · 8. (현행과 같음) <u>9. 평창군이장연합회 정기회의 참석 이장에 대한 급식비</u> 10. (현행 제9호와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법률 제19951호]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별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149호]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6조(임무수행 등 지원) 제9호
: 평창군이장연합회 정기회의 참석 이장에 대한 급식비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 9,000원*26명*연 10회 = 2,340,000원
※ 평창군이장연합회 정기회의 참석 인원: 26명
 - 평창 4/ 미탄 3/ 방림 3/ 대화 3/ 봉평 3/ 용평 3/ 진부 4/ 대관령 3
 - 각 읍·면협의회별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참석 / 평창·진부: 부회장 2명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행정담당관 이 시 균
연락처	(033) 330 - 2210